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109호

###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조 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지원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 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부담금의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수급자를 결정하거나 부담금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부담금은 수급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자가 지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담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거나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수급자가 부담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수급자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급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김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322호
----------	--------

발의연월일 : 2013년 10월 7일

발 의 의원 : 김종숙,김종식,최동진의원(3인)

찬 성 의원 : 김경구,강성옥,서동완,이복

## 1. 제안이유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 중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지원대상자

-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 나. 지원범위(안 제4조)

-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한다.

### 다.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 규정(안 제5조~제6조)

### 라.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합 의 : 복지지원과

### 4. 붙 임

○ 제정 조례안 1부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110호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 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1.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 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운영 등)** 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 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 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한 시설(그룹홈)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입소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6. 기타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그룹홈의 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 등 양육자의 양육기술 부족과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등으로 인한 유기와 방임 및 지속적 정신공황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9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그룹홈 운영자(개인운영시설)를 임대주택사업 또는 전세자금지원사업 등에 우선 추천
2. 그룹홈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 그룹홈에 대체인력, 공공근로 인력 등 보조인력 파견
4.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그룹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공동생활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시의원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5. 그룹홈 입소 아동의 보호자

6.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그룹홈의 기본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그룹홈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그룹홈의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가운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그룹홈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324호
----------	--------

발의연월일 : 2013년 10월 14일  
 발 의 의원 : 김종식, 강성욱 의원(2인)  
 찬 성 의원 : 엄문정, 최동진, 김종숙  
 채경석, 박정희, 서동완

## 1. 제안이유

- 저소득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아동들에게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 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 및 보호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그룹홈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제6조)
- 라. 그룹홈의 개선, 정지, 폐쇄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 마. 그룹홈 입소대상자의 자격 및 비용지원에 대해 정함(안 제8조~제9조)
- 바. 그룹홈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제13조)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111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임신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총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특별휴가) ①·②·③(생략)</p> <p>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u>&lt;후단신설&gt;</u></p>	<p>제21조(특별휴가) ①·②·③(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u>또한 임신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총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u></p>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3. 9. .  
 제출자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자 총 무 과 장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⑥항 신설,  
 일부개정령 공포("13. 5. 31) 및 시행("13. 7. 1)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의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가정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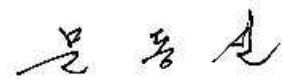
- 임신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총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 제공 - 안 제21조제4항

## 3. 참고내용

-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라. 입법 예고기간 : 2013. 8. 1 ~ 8. 21(20일간)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112호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단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본 시설은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 814)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컨벤션홀, 기업지원실, 회의실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종합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2. “전시관”이라 함은 실내전시관·야외전시장 등 전시관 및 그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관료 및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및 근로자 지원업무
2.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시설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료 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제5조 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기업지원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실 및 전시관 사용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기간 및 기간갱신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기한, 관리능력 평가항목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시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위탁에 따른 정산 보고를 하게 하고,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 재산을 운영목적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가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에 대하여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 운영 및 사용조례」는 폐지한다.

## [별표 1]

## 센터 사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면적 (㎡)	사 용 료(부가세 별도)						초 과 사용료 (시간당)	
		09:00~ 12:00 (오 전)	13:00~ 17:00 (오 후)	18:00~ 21:00 (야 간)	09:00~ 17:00 (전 일)	13:00~ 21:00 (반 일)	09:00~ 21:00 (종 일)		
컨벤션홀	전체	1,825	1,971	2,628	1,892	4,139	4,461	6,044	604
	홀-1(분할)	780	842	1,123	808	1,768	1,906	2,582	258
	홀-2(분할)	1,045	1,128	1,504	1,082	2,368	2,553	3,459	345
중회의실	210	180	194	259	186	407	439	595	59
소회의실	201~203, 206~209 중 1실	47	50	67	48	105	113	154	15
	204	73	78	105	75	165	178	241	24
	205	58	62	83	59	130	140	190	19
	201~202, 208~209 (통합)	97	104	139	100	218	235	319	31
	203~204 (통합)	118	126	169	121	266	286	388	38
사용료 할증	·회의실을 전시 용도로 사용시 사용료의 30% 할증								
유의사항	·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별표 2]

## 전시관 사용료

구 분		사용요율	비 고	
장소별	산업전시관(3,697m <sup>2</sup> )	450원/m <sup>2</sup>	1일 기준	
	옥외전시장(7,300m <sup>2</sup> )	150원/m <sup>2</sup>	1일 기준	
	실내로비(1,219m <sup>2</sup> )	2,000원/m <sup>2</sup>	사용면적당	
할 인 할증률	월 별 차등률	1, 2, 7, 8, 12월	30% 할인	
		3월	20% 할인	
	규모별 차등률	1/2미만 사용시	20% 할증	
		옥내외 전체사용시	15% 할인	
	기간별 차등률	15일~1개월 미만	10% 할인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0% 할인	
		2개월 이상	30% 할인	
	시간외 사용료	기간별 차등적용	초과시간당	10% 가산
	유의 사항	·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 1. 제안이유

- 산업단지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회의 및 전시회 개최 등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와 산업전시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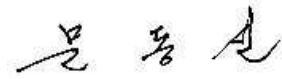
-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7조)
-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제9조)
-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
-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 별지 제2호)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예산심사 : 비용추계서 첨부
- 관련심사 : 사전심사(법무계),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계)
- 입법예고 : 2013. 9. 16. ~ 10. 7. / 의견 접수 : 없음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113호

###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로컬푸드”(Gunsan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에너지 및 화학 영농자재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 지역에서 신뢰 할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6.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7.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8. “지역식량계획”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군산시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 제2장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 계획”중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과 표시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평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다음연도 본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3장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관련 가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5. 지역내 학교급식담당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3명
7. 지역내 회사급식담당
8. 지역내 회사급식 외주업체 대표
9. 지역내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10.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장 및 활동을 하였을 때 여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제16조(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을 다품목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학교밥상 생산단지, 비빔밥 및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두레농장, 단체급식 등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7조(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민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민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장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운영

**제18조(통합센터 설치)**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이하“통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홍보·교류협력사업
6. 공공(학교) 및 회사 급식사업 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저장·가공·선별·포장·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김치·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프레스푸드단지 : 제빵·제과·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홍보센터 : 로컬푸드 관련 교육·상담·자문
6. 공공(학교)지원센터 : 정책·기획·홍보, 물류·유통

7. 기타 시장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9조(통합센터 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시장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통합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장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제20조(인증의 목적)** 시장은 로컬푸드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적합 농식품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관내 농식품의 품질을 차별화하여 생산농가소득 제고,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을 통한 지역식량자급체계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용어)**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군산시에서 군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2. “가공품”이라 함은 군산시에서 군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및 자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시장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 로컬푸드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는 권한을 말한다.

5. “인증관리원”이라 함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상표의 품위유지와 인증농식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군산로컬푸드 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시장이 인증한 군산로컬푸드의 상징 표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인증상표의 모양과 규격, 사용관련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 매뉴얼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2조(로컬푸드의 인증)** ① 시장은 생산농가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산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군산로컬푸드 농산물(이하“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자 등의 관련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23조(인증대상)** ① 인증 대상은 농산물과 축산물 및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군산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없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신청 및 심사)** ① 군산시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기간·신청대상자·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인증심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공무원인 인증심사원을 지정 운영 한다.

**제25조(인증 부여)** 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할 경우에는 군산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2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인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군산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 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당한 사람은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8조(인증상표 사후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인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생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교육 이수자에게 소정의 수료 증서를 줄 수 있다.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 시장은 군산로컬푸드 인증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제30조(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부여 및 취소에 관한 심의 등 인증에 관한 업무는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

다)가 수행한다.

- ② 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심의회는 인증관리의 체계구축을 위해서 인증신청, 분석기관 검사결과 등을 포함한 인증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은 군산로컬푸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군산로컬푸드 기본이념이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시장은 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31조(로컬푸드 인증센터 설립)** ① 농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 기타 군산로컬푸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 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교육 및 시험, 연구 분석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인증센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인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장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

**제32조(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민장터와 전문판매점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및 전문판매점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북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유통안정기금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공동체지원형 농업의 활성화)** ① 시장은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밥상꾸러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육성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문판매점에 로컬푸드 식재료 뿐 아니라 지역가공식품, 농가레스토랑, 농촌정보센터 등을 두어 포괄적인 도농교류거점공간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제34조(로컬푸드 학교급식의 실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영양과 칼로리가 균형을 이룬 로컬푸드 건강학교밥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로컬푸드 생산단지 조성
2. 로컬푸드 통합센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에 필요한 유통사업
3.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4. 군산형 건강학교밥상 모델 개발 및 아침식사 공급 시범사업
5.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실사구시의 먹을거리 교육사업
6. 일반푸드와 로컬푸드의 가격차액보전사업
7.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제휴푸드 연대사업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35조(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

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3.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군사시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
5. 「학교보건법」 제2조의 학교
6. 그 밖에 요식업소, 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단체 등에서는 농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청소년·장애인 등)·저소득 계층(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사업을 연계 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제37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운영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농식품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9조(로컬푸드의 날)**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건강밥상 축제(가칭)” 또는 “군산로컬푸드의 날(가칭)” 등을 제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제휴푸드 활성화 및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최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23호
------	--------

발의년월일 : 2013년 10월 일  
 발 의 의 원 : 최인정·김경구·김영일,  
 진희완 (4인)  
 찬 성 의 원 : 엄문정·서동완·이복  
 김종숙·강성욱 (5인)

## 1. 제안 이유

- 군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 내용

-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 관련 (안 제4조, 제5조)
-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안 제6조 ~ 제15조)
-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관련 (안 제16조, 제17조)
-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운영 관련 (안 제18, 제19조)
-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관련 (안 제20조 ~ 제31조)
-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 관련 (안 제32조 ~ 제36조)
- 로컬푸드 협력체제 구축 관련 (안 제38조 ~ 제40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합 의 : 농수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계, 기획예산과 법무계
- 입법예고 : 2013. 10. 15 ~ 10. 21 / 의견접수 : 없음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11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114호

###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화거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13조의 군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 회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
3. 담당 공무원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특화거리 지정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

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지원사업)**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비지원)**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기회는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최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12호
------	--------

발의년월일 : 2013년 08월 30일  
 발 의 의 원 : 최인정·박정화·최동진 (3인)  
 정길수, 김경구, 신경용  
 찬 성 의 원 : 조부철, 김종식, 김우민  
 서동완(7인)

## 1. 제안 이유

-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 내용

### 가. 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나. 특화거리 지정 (안 제7조)

- 시장은 군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음

### 다. 특화거리 지정기준 (안 제8조)

-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참여시켜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함

### 라. 특화거리 지정신청 (안 제9조)

-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마. 지원사업 (안 제11조)

○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바. 사업비지원 (안 제12조)

-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함
-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음

### 사. 위원회관련 (안 제13조 ~ 제19조)

-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둠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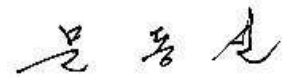
나. 합 의 : 지역경제과 상정계, 기획예산과 법무계

다. 기 타

(1) 제정안 : 별첨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 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11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541호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반사항과 대상지역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사업지역”이란 군산시 단독주택지역을 말한다.
- 2.“단위사업”이란 보급대상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 3.“수요자”란 단독주택가구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공급사업을 신  
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위사업지역 내 영업·업무용 등 복  
합용도는 포함한다. 다만, 순수 영업·업무용은 제외한다.
- 4.“공사주민 분담금”이란 단위사업의 공사분담금으로서 「도시가스  
사업법」 및 전라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  
(이하“공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총 공사비 중 사업지역 내 가구의  
주민이 분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 신청자격은 건축물 소유자(법인 제외)이어야 한다.

② 신청자격은 단위사업별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공급관 연장 100m당 10세대(난방용계량기 설치 기준)미만 지역에 한하여 동시 신청 수요자에 한한다.(단위사업 공사완료 이후 개별 신청자 제외)

③ 단독주택 및 영업·업무용 등 복합용도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제4조(선정방법) ① 군산시는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업자의 실행품의 설계 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선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할 때에는 지역별 수요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조정·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자를 결정한다.

1. 국민기초수급세대 및 차상위계층세대 등이 많은 지역
2. 지역주민 참여율이 높고 공사주민 분담금액이 작은 지역
3. 지역주민 참여율이 높은 지역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선정통보) ① 군산시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사업자와 수요자에게 선정 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아니 할수 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10세대(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 이상인 지역
3. 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각 가구별 도시가스 사용시설 내부의 설치공사
6.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마을 및 도로굴착 불허가 구간

제6조(이의신청) ①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지역의 취소) 선정지역의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제2호의 경우 선정취소 후 동일지역은 2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
2.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포기자가 20%초과 되는 경우 다만, 포기자가 20%를 초과하였어도 단위사업지역 내 70%이상의 세대가 희망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사시공) 선정된 단위사업은 공사공급 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시공한다.

제9조(보조금의 집행)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으면 공급관 설치 공사 완료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1. 제안이유

○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100호, 2013. 7. 26공포, 2014. 1. 1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반사항, 대상지역 선정에 필요한 사항,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 기능의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및 제7조)
-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집행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예산심사 : 해당없음(조례 제정시 비용추계서 첨부)
- 법규심사 : 사전심사(법무계), 규제심사(기획),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계)
- 입법예고 : 2013. 9. 16. ~ 10. 7.

군산시 과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3년 11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305호

## 군산시 과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중 “직렬별”을 “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① ----- -----직렬별(지방 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② -----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①시 본청에 두는 과별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은 "별표 1"과 같다.	-----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포 함) -----.
②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은 "별표 2"와 같다.	③ ----- -----
③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은 "별표 3"과 같다.	-----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포 함) -----.
④사업소 및 과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은 "별표 4"와 같다.	④ ----- -----
⑤읍·면·동의 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 의 직급·직렬별은 "별표 5"와 같다.	-----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포 함) -----. ⑤ ----- ----- -----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포 함) -----.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2013. . . >

[별표1]

[본청]

기관별 직급 직렬별		합 계	직	공	감	정	새	자	총	기	회	세	징	민	인	국
			속	보	사	보	만	치	획	회	원	재	제			
			부	담	담	통	금	행	무	예	계	무	수	봉	양	협
			서	당	당	신	지	정	과	산	과	과	과	사	성	력
			계	관	관	당	원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b>총 계</b>		769	53	10	14	19	10	196	48	22	23	31	24	24	14	10
<b>정 무 직 계</b>		1						1	1							
<b>일 반 직 계</b>		759	52	9	14	19	10	194	46	22	23	31	24	24	14	10
3급	소 계	1						1	1							
	행 정	1						1	1							
4급	소 계	4						1	1							
	행 정	1						1	1							
	행 정 · 기 술	3														
5급	소 계	34	4	1	1	1	1	8	1	1	1	1	1	1	1	1
	행 정	15	2	1	1			8	1	1	1	1	1	1	1	1
	해 양 수 산	1														
	시 설	2														
	행 정 · 사 회	3														
	행 정 · 농 업	1														
	행 정 · 환 경	1														
	행 정 · 시 설	7	1				1									
	행 정 · 통 신	1	1			1										
	행 정 · 농 업 · 해 수	1														
	행 정 · 녹 지 · 시 설	1														
	공 업 · 보 건 · 환 경	1														
	6급	소 계	166	12	2	3	4	3	40	8	6	5	5	5	5	3
행 정		55	6	2	2		2	24	5	6	3			4	3	3
세 무		2						2				2				
전 산		1	1			1										
사 회 복 지		1														
농 업		2														
녹 지		2														
해 양 수 산		2														

직별	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직속부서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6급		보 건		1															
		시 설		16	1			1											
		운 전		1					1			1							
		시 설 관 리		1															
		전 기 운 영		1					1	1									
		기 계 운 영		1					1				1						
		선 박 항 해 운 영		1															
		사 무 운 영		1															
		행 정 · 세 무		9						9				3	5	1			
		행 정 · 전 산		1	1			1											
		행 정 · 사 회		15															
		행 정 · 공 업		3															
		행 정 · 농 업		3															
		행 정 · 녹 지		1															
		행 정 · 해 수		2															
		행 정 · 환 경		2															
		행 정 · 시 설		19	1		1												
		행 정 · 별 정																	
		전 산 · 시 설		1															
		전 산 · 통 신		2	2			2											
		공 업 · 환 경		2															
		공 업 · 시 설		2						1	1								
		농 업 · 수 의		2															
		농 업 · 시 설		1															
		녹 지 · 시 설		2															
		해 수 · 환 경		1															
		보 건 · 식 위		1															
		보 건 · 환 경		1															
		행 정 · 세 무 · 사 회		1						1	1								
		행 정 · 전 산 · 통 신		1															
	행 정 · 농 업 · 해 수		1																

직별	직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직속	공보	감사	정보통신	새만금	자치행정	총무	기획예산	회계	세무	징수	민원봉사	인재양성	국제협력
					부서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지원담당관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6급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복지·시설	1															
		공업·보건·환경	1															
		행정·사회·보건·간호	1															
7급	계	소	232	17	2	7	5	3	71	19	9	9	9	7	7	7	4	
	정	행	92	6	2	2		2	41	12	7	5			6	7	4	
	무	세	2						2					2				
	산	전	1	1			1											
	업	공	4						1	1								
	업	농	7															
	지	녹	4															
	의	수	1															
	산	해양수	6															
	건	보	2															
	생	식품위	3															
	호	간	1															
	경	환	5															
	설	시	36	2		2												
	신	방송통	2	2			2											
	전	운	6						4	1	1	1				1		
	리	시설관	1															
	영	통신운	1						1	1								
	영	기계운	2						1	1								
	영	선박항	2															
	영	선박기	1															
	영	사무운	4						3	2		1						
	무	행정·세	18	1		1			17		1	2	9	5				
	산	행정·전	3	2			2		1	1								
		행정·사	15	1		1												
	업	행정·공	1															
업	행정·농	1																

직별	직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직속	공보	감사	정보통신	새만금	자치행정	총무	기획예산	회계	세무	징수	민원봉사	인재양성	국제협력	
					부서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지원담당관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7급	행정·해수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5	2		1		1												
	행정·별정																		
	공업·환경	2																	
	보건·식위	1																	
8급	소계	177	8	1	1	4	2	43	10	5	5	9	6	6	1	1			
	행정	62	3	1	1		1	25	7	5	3		2	6	1	1			
	세무	3						3				3							
	전산	2																	
	사회복지	1																	
	공업	6																	
	농업	1																	
	녹지	3																	
	해양수산	6																	
	보건	5																	
	환경	3																	
	시설	27	1				1												
	방송통신	2	2			2													
	운전	4																	
	위생	1							1	1									
	건축운영	1							1	1									
	통신운영	2																	
	전화상담운영	1	1			1													
	전기운영	1																	
	기계운영	5																	
	선박항해운영	2																	
	선박기관운영	2																	
	사무운영	6							3			2		1					
	행정·전산	1																	
행정·시설	6																		

직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직속	공보	감사	정보통신	새만금	자치행정	총무	기획예산	회계	세무	징수	민원봉사	인재양성	국제협력
			부서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지원담당관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8급	행정·사서	1						1	1							
	행정·사회	12														
	행정·세무	9						8				5	3			
	세무·전산	1						1				1				
	전산·통신	1	1			1										
9급	소계	145	11	3	2	5	1	30	6	1	3	7	5	5	2	1
	행정	16	1	1				6	2		1			2	1	
	세무	10						10				5	5			
	전산	2	2			2										
	사회복지	23														
	공업	3														
	농업	2														
	녹지	2														
	보건	2														
	환경	3														
	시설	20	2		1		1									
	방송통신	1	1			1										
	운전	3						1			1					
	위생	3														
	시설관리	2						1	1							
	통신운영	1	1	1												
	전화상담운영	2	2			2										
	전기운영	4														
	기계운영	4	1	1												
	열관리운영	4						2	2							
사무운영	38	1		1			10	1	1	1	2		3	1	1	
전문경력관계	7	1	1													
나군	소계	7	1	1												
	홍보연구관	1	1	1												
	청소년수련지도사	3														
	체육진흥연구원	1														
	수영강사	2														

직 별	급 직렬별	기관별	합 계	직 속 부 서 계	공 보 담 당 관	감 사 담 당 관	정 보 통 신 담 당 관	새 만 금 지 원 담 당 관	자 치 행 정 국 계	총 무 과	기 획 예 산 과	회 계 과	세 무 과	징 수 과	민 원 봉 사 과	인 재 양 성 과	국 제 협 력 과
			1						1	1							
6급	소		1						1	1							
	비		1						1	1							
			1														
연구 사	소		1														
	학 예 연구		1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항만	지역	투자	항만	농	해양	산림	농수산물	주민	주민	복지	여성	문화	관광	체육	환경	자원
		경제	경제	지원	물류	정	수산	녹지	유통	복지	생활	지원	아동	예술회	진흥	진흥	위생	순환
총 계		136	25	19	12	20	27	18	15	215	40	23	25	22	19	29	30	27
정무직계																		
일반직계		136	25	19	12	20	27	18	15	208	40	23	22	21	19	26	30	27
3급	소계																	
	행정																	
4급	소계	1	1							1	1							
	행정·기술	1	1							1	1							
5급	소계	7	1	1	1	1	1	1	1	8	1	1	1	1	1	1	1	1
	행정	2	1	1						2				1		1		
	해양수산	1					1											
	시설																	
	행정·사회									3	1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1					1			
	행정·통신																	
	행정·농업·해수	1							1									
	행정·녹지·시설	1						1										
	공업·보건·환경									1								1
6급	소계	34	6	5	3	5	6	5	4	42	6	5	7	5	4	4	6	5
	행정	12	5	5	2					9			1	4	1	2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1	1							
	농업	2				2												
	녹지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								1
	시설									1					1			
	운전																	
	시설관리									1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항만	지역	투자	항만	농	해양	산림	농수산물	주민	주민	복지	여성	문화	관광	체육	환경	자원
		경제	경제	지원	물류	정	수산	녹지	유통	복지	생활	지원	아동	예술회	진흥	진흥	위생	순환
계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전 기 운 영																	
	기 계 운 영																	
	선 박 항 해 운 영	1				1												
	사 무 운 영																	
	행 정 · 세 무																	
	행 정 · 전 산																	
	행 정 · 사 회								15	5	5	5						
	행 정 · 공 업	1	1						1							1		
	행 정 · 농 업	3				1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해 수	2					1		1									
	행 정 · 환 경									2							1	1
	행 정 · 시 설	2			1		1		2					1	1			
	행 정 · 별 정																	
	전 산 · 시 설																	
	전 산 · 통 신																	
	공 업 · 환 경									2								2
	공 업 · 시 설									1						1		
	농 업 · 수 의	2				2												
	농 업 · 시 설																	
	녹 지 · 시 설	2							2									
	해 수 · 환 경	1					1											
	보 건 · 식 위									1								1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세 무 · 사 회																	
	행 정 · 전 산 · 통 신																	
	행 정 · 농 업 · 해 수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환 경 · 시 설																	
	행 정 · 녹 지 · 시 설									1					1			
	공 업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사 회 · 보 건 · 간 호									1			1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항만	지역	투자	항만	농	해양	산림	농수산물	주민	주민	복지	여성	문화	관광	체육	환경	자원	
			경제	경제	지원	정	수산	물류	통과	복지	생활	지원	아동	예	진흥	진흥	위	순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7급	소계		42	7	3	4	9	10	5	4	57	7	7	6	6	4	5	13	9	
	행정		15	6	3	3			1	2	17	1	1	4	4	3	2		2	
	세무																			
	전산																			
	공업		1				1				2						2			
	농업		7				6			1										
	농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5					4		1										
	보건										2								2	
	식품위생										3								3	
	간호										1						1			
	환경										5								3	2
	시설		2			1		1			3				2	1				
	방송통신																			
	운전										2								1	1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2					2												
	선박기관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										14	6	6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해수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행정·별정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항만	지역	투자	항만	농	해양	산림	농수산물	주민	주민	복지	여성	문화	관광	체육	환경	자원		
		경제	경제	지원	물류	정	수산	녹지	물류	복지	생활	지원	아동	예	진흥	진흥	위생	순환		
계	계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공업·환경									2								1	1	
	보건·식위									1								1		
8급	소계	33	5	6	3	2	9	5	3	46	7	4	4	4	8	5	5	9		
	행정	14	3	5	2	2			2	14	1		1	2	4	3		3		
	세무																			
	전산																			
	사회복지									1		1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6			1		5													
	보건									5									4	1
	환경									3									1	2
	시설	1							1	4				1	2	1				
	방송통신																			
	운전	1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4				1		1				2
	선박항해운영	2					2													
	선박기관운영	2					2													
	사무운영									2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서																			
행정·사회									12	6	3	3								
행정·세무	1		1																	
세무·전산																				
전산·통신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9급	소 계	19	5	4	1	3	1	2	3	54	18	6	4	5	2	11	5	3
	행정	5	2				1		2	4		1		1	1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23	17	3	3					
	공업									2					1	1		
	농업	2				2												
	녹지	2						2										
	보건									2						1	1	
	환경									3							2	1
	시설	2		2														
	방송통신																	
	운전									1	1							
	위생									3						2		1
	시설관리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2		1				1		
	열관리운영									2						2		
사무운영	8	3	2	1	1				1	10		1	1	4		3	1	
전문경력관	계								6			3			3			
나군	소 계								6			3			3			
	홍보연구관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체육진흥연구원								1						1			
	수영강사								2						2			
별정직	계																	
6급	소 계																	
	비서																	
연구	직 계								1				1					
연구사	소 계								1				1					
	학예연구								1				1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건설	도시	건	공	건	교	재	토
		교통국 국계	계획 과	설 과	영 사 업 과	축 과	통 행 정 과	난 관 리 과	지 정 보 과
총 계		169	24	35	18	27	25	18	22
정 무 직 계									
일 반 직 계		169	24	35	18	27	25	18	22
3급	소 계								
	행 정								
4급	소 계	1	1						
	행 정								
	행 정 · 기 술	1	1						
5급	소 계	7	1	1	1	1	1	1	1
	행 정	1					1		
	해 양 수 산								
	시 설	2		1		1			
	행 정 · 사 회								
	행 정 · 농 업								
	행 정 · 환 경								
	행 정 · 시 설	4	1		1			1	1
	행 정 · 통 신								
	행 정 · 농 업 · 해 수								
	행 정 · 녹 지 · 시 설								
	공 업 · 보 건 · 환 경								
6급	소 계	38	6	7	4	6	6	4	5
	행 정	4					3	1	
	세 무								
	전 산								
	사 회 복 지								
	농 업								
	녹 지								
	해 양 수 산								
	보 건								
	시 설	14	3	2	2	4			3
	운 전								
	시 설 관 리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건설	도시	건	공	건	교	재	토
		설	시	건	공	건	통	난	지
		교	계	설	영	축	행	관	정
		통	획	과	사	과	정	리	보
		국	과	과	업	과	과	과	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전 기 운 영								
	기 계 운 영								
	선 박 항 해 운 영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행 정 · 전 산								
	행 정 · 사 회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농 업								
	행 정 · 녹 지								
	행 정 · 해 수								
	행 정 · 환 경								
	행 정 · 시 설	14	3	2	2	2	1	3	1
	행 정 · 별 정								
	전 산 · 시 설	1							1
	전 산 · 통 신								
	공 업 · 환 경								
	공 업 · 시 설								
	농 업 · 수 의								
	농 업 · 시 설	1		1					
	녹 지 · 시 설								
	해 수 · 환 경								
	보 건 · 식 위								
	보 건 · 환 경								
	행 정 · 세 무 · 사 회								
	행 정 · 전 산 · 통 신	1					1		
	행 정 · 농 업 · 해 수								
	행 정 · 보 건 · 환 경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행 정 · 녹 지 · 시 설								
	공 업 · 보 건 · 환 경								
	행 정 · 사 회 · 보 건 · 간 호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건설	도시	건	공	건	교	재	토
		교	통	국	시	설	영	축	통	난	지
계	과	계	국	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7급	소 계	45	8	7	5	7	6	6	6	6	
	행 정	13	1	3	1	1	4	2	1		
	세 무										
	전 산										
	공 업										
	농 업										
	녹 지										
	수 의										
	해 양 수 산	1							1		
	보 건										
	식 품 위 생										
	간 호										
	환 경										
	시 설	29	7	4	4	5	1	3	5		
	방 송 통 신										
	운 전										
	시 설 관 리										
	통 신 운 영										
	기 계 운 영										
	선 박 항 해 운 영										
	선 박 기 관 운 영										
	사 무 운 영										
	행 정 · 세 무										
	행 정 · 전 산										
	행 정 · 사 회										
	행 정 · 공 업										
	행 정 · 농 업										
	행 정 · 해 수										
	행 정 · 보 건										
	행 정 · 환 경										
행 정 · 시 설	2					1	1				
행 정 · 별 정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건설교통국계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공업·환경								
	보건·식위								
8급	소계	47	6	9	6	7	10	4	5
	행정	6		1			3	1	1
	세무								
	전산	2					1		1
	사회복지								
	공업	5		2	2			1	
	농업								
	녹지								
	해양수산								
	보건								
	환경								
	시설	21	6	2	3	5	1	1	3
	방송통신								
	운전	3		2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2					1	1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								
	행정·시설	5		1	1	2	1		
	행정·사서								
	행정·사회								
	행정·세무								
세무·전산									
전산·통신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9급	소 계	31	2	11	2	6	2	3	5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1					1		
	농업								
	녹지								
	보건								
	환경								
	시설	16	2	3	2	5		2	2
	방송통신								
	운전	1		1					
	위생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9		3		1	1	1	3	
전문경력관 계									
나군	소 계								
	홍보연구관								
	청소년수련지도사								
	체육진흥연구원								
	수영강사								
별정직 계									
6급	소 계								
	비서								
연구직 계									
연구사	소 계								
	학예연구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2013. . . >

[별표1]

[본청]

기관별 직급 직렬별		합 계	직	공	감	정	새	자	총	기	회	세	징	민	인	국
			속	보	사	보	만	치	무	회	세	원	재	제		
			부	담	담	통	금	행	예	계	무	수	봉	양	협	력
			서	당	신	지	원	정	산	과	과	과	사	성	과	과
			계	관	신	원	당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b>총 계</b>		769	53	10	14	19	10	196	48	22	23	31	24	24	14	10
<b>정 무 직 계</b>		1						1	1							
<b>일 반 직 계</b>		759	52	9	14	19	10	194	46	22	23	31	24	24	14	10
3급	소 계	1						1	1							
	행 정	1						1	1							
4급	소 계	4						1	1							
	행 정	1						1	1							
	행 정 · 기 술	3														
5급	소 계	34	4	1	1	1	1	8	1	1	1	1	1	1	1	1
	행 정	15	2	1	1			8	1	1	1	1	1	1	1	1
	시 설	2														
	행 정 · 사 회	3														
	행 정 · 농 업	1														
	행 정 · 환 경	1														
	행 정 · 시 설	7	1				1									
	행 정 · 통 신	1	1			1										
	행 정 · 농 업 · 해 수	1														
	행 정 · 녹 지 · 시 설	1														
	행 정 · 해 수 · 시 설	1														
	공 업 · 보 건 · 환 경	1														
6급	소 계	166	12	2	3	4	3	40	8	6	5	5	5	5	3	3
	행 정	55	6	2	2		2	24	5	6	3			4	3	3
	세 무	2						2				2				
	전 산	1	1			1										
	사 회 복 지	1														
	농 업	2														
	녹 지	2														
	해 양 수 산	2														

직별	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직속 부서 계	공 보 담 당 관	감 사 담 당 관	정 보 통 신 담 당 관	새 만 금 지 원 담 당 관	자 치 행 정 국 계	총 무 과	기 획 예 산 과	회 계 과	세 무 과	징 수 과	민 원 봉 사 과	인 재 양 성 과	국 제 협 력 과	
6급		보 건		1															
		시 설		16	1			1											
		운 전		1						1			1						
		시 설 관 리		1															
		전 기 운 영		1						1	1								
		기 계 운 영		1						1			1						
		선 박 항 해 운 영		1															
		사 무 운 영		1															
		행 정 · 세 무		9						9					3	5	1		
		행 정 · 전 산		1	1			1											
		행 정 · 사 회		15															
		행 정 · 공 업		3															
		행 정 · 농 업		3															
		행 정 · 녹 지		1															
		행 정 · 해 수		2															
		행 정 · 환 경		2															
		행 정 · 시 설		19	1			1											
		행 정 · 별 정																	
		전 산 · 시 설		1															
		전 산 · 통 신		2	2			2											
		공 업 · 환 경		2															
		공 업 · 시 설		2						1	1								
		농 업 · 수 의		2															
		농 업 · 시 설		1															
		녹 지 · 시 설		2															
		해 수 · 환 경		1															
		보 건 · 식 위		1															
		보 건 · 환 경		1															
		행 정 · 세 무 · 사 회		1						1	1								
		행 정 · 전 산 · 통 신		1															
	행 정 · 농 업 · 해 수		1																

직별	직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직속	공보	감사	정보통신	새만금	자치행정	총무	기획예산	회계	세무	징수	민원봉사	인재양성	국제협력
					부서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지원담당관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6급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복지·시설	1															
		공업·보건·환경	1															
		행정·사회·보건·간호	1															
7급	계	소	232	17	2	7	5	3	71	19	9	9	9	7	7	7	4	
	정	행	92	6	2	2		2	41	12	7	5			6	7	4	
	무	세	2						2					2				
	산	전	1	1			1											
	업	공	4						1	1								
	업	농	7															
	지	녹	4															
	의	수	1															
	산	해양수	6															
	건	보	2															
	생	식품위	3															
	호	간	1															
	경	환	5															
	설	시	36	2		2												
	신	방송통	2	2			2											
	전	운	6						4	1	1	1				1		
	리	시설관	1															
	영	통신운	1						1	1								
	영	기계운	2						1	1								
	영	선박항	2															
	영	선박기	1															
	영	사무운	4						3	2		1						
	무	행정·세	18	1		1			17		1	2	9	5				
	산	행정·전	3	2			2		1	1								
		행정·사	15	1		1												
	업	행정·공	1															
업	행정·농	1																

직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직속	공보	감사	정보통신	새만금	자치행정	총무	기획예산	회계	세무	징수	민원봉사	인재양성	국제협력
				부서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지원담당관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7급	행정·해수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5	2		1		1										
	행정·별정																
	공업·환경	2															
	보건·식위	1															
8급	소계	177	8	1	1	4	2	43	10	5	5	9	6	6	1	1	
	행정	62	3	1	1		1	25	7	5	3		2	6	1	1	
	세무	3						3				3					
	전산	2															
	사회복지	1															
	공업	6															
	농업	1															
	녹지	3															
	해양수산	6															
	보건	5															
	환경	3															
	시설	27	1				1										
	방송통신	2	2			2											
	운전	4															
	위생	1							1	1							
	건축운영	1							1	1							
	통신운영	2															
	전화상담운영	1	1			1											
	전기운영	1															
	기계운영	5															
	선박항해운영	2															
	선박기관운영	2															
	사무운영	6							3			2		1			
	행정·전산	1															
행정·시설	6																

직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직속	공보	감사	정보통신	새만금	자치행정	총무	기획예산	회계	세무	징수	민원봉사	인재양성	국제협력
			부서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지원담당관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8급	행정·사서	1						1	1							
	행정·사회	12														
	행정·세무	9						8				5	3			
	세무·전산	1						1				1				
	전산·통신	1	1			1										
9급	소계	145	11	3	2	5	1	30	6	1	3	7	5	5	2	1
	행정	16	1	1				6	2		1			2	1	
	세무	10						10				5	5			
	전산	2	2			2										
	사회복지	23														
	공업	3														
	농업	2														
	녹지	2														
	보건	2														
	환경	3														
	시설	20	2		1		1									
	방송통신	1	1			1										
	운전	3						1			1					
	위생	3														
	시설관리	2						1	1							
	통신운영	1	1	1												
	전화상담운영	2	2			2										
	전기운영	4														
	기계운영	4	1	1												
	열관리운영	4						2	2							
사무운영	38	1		1			10	1	1	1	2		3	1	1	
전문경력관계	7	1	1													
나군	소계	7	1	1												
	홍보연구관	1	1	1												
	청소년수련지도사	3														
	체육진흥연구원	1														
	수영강사	2														

직 별	급 직렬별	기관별	합 계	직 속 부 서 계	공 보 담 당 관	감 사 담 당 관	정 보 통 신 담 당 관	새 만 금 지 원 담 당 관	자 치 행 정 국 계	총 무 과	기 획 예 산 과	회 계 과	세 무 과	징 수 과	민 원 봉 사 과	인 재 양 성 과	국 제 협 력 과
			1						1	1							
6급	소		1						1	1							
	비		1						1	1							
			1														
연구 사	소		1														
	학 예 연 구		1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항만	지역	투자	항만	농	해양	산림	농수산물	주민	주민	복지	여성	문화	관광	체육	환경	자원
		경제	경제	지원	물류	정	수산	녹지	유통	복지	생활	지원	아동	예술회	진흥	진흥	위생	순환
총 계		136	25	19	12	20	27	18	15	215	40	23	25	22	19	29	30	27
정무직계																		
일반직계		136	25	19	12	20	27	18	15	208	40	23	22	21	19	26	30	27
3급	소계																	
	행정																	
4급	소계	1	1							1	1							
	행정·기술	1	1							1	1							
5급	소계	7	1	1	1	1	1	1	1	8	1	1	1	1	1	1	1	1
	행정	2	1	1						2				1		1		
	시설																	
	행정·사회									3	1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1					1			
	행정·통신																	
	행정·농업·해수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수·시설	1					1											
	공업·보건·환경									1								1
6급	소계	34	6	5	3	5	6	5	4	42	6	5	7	5	4	4	6	5
	행정	12	5	5	2					9			1	4	1	2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1	1							
	농업	2				2												
	녹지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								1
	시설									1					1			
	운전																	
	시설관리									1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항만	지역	투자	항만	농	해양	산림	농수	주민	주민	복지	여성	문화	관광	체육	환경	자원
		경제	경제	지원	물류	정	수산	녹지	산물	생활	생활	지원	아동	예술회	진흥	진흥	위생	순환
계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전 기 운 영																	
	기 계 운 영																	
	선 박 항 해 운 영	1				1												
	사 무 운 영																	
	행 정 · 세 무																	
	행 정 · 전 산																	
	행 정 · 사 회								15	5	5	5						
	행 정 · 공 업	1	1						1							1		
	행 정 · 농 업	3				1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해 수	2					1		1									
	행 정 · 환 경									2							1	1
	행 정 · 시 설	2			1		1		2					1	1			
	행 정 · 별 정																	
	전 산 · 시 설																	
	전 산 · 통 신																	
	공 업 · 환 경									2								2
	공 업 · 시 설									1						1		
	농 업 · 수 의	2				2												
	농 업 · 시 설																	
	녹 지 · 시 설	2							2									
	해 수 · 환 경	1					1											
	보 건 · 식 위									1								1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세 무 · 사 회																	
	행 정 · 전 산 · 통 신																	
	행 정 · 농 업 · 해 수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환 경 · 시 설																	
	행 정 · 녹 지 · 시 설									1					1			
	공 업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사 회 · 보 건 · 간 호									1			1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항만	지역	투자	항만	농	해양	산림	농수산물	주민	주민	복지	여성	문화	관광	체육	환경	자원	
			경제	경제	지원	정	수산	녹지	물류	통과	복지	생활	지원	아동	예	진흥	진흥	위	순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7급	소계		42	7	3	4	9	10	5	4	57	7	7	6	6	4	5	13	9	
	행정		15	6	3	3			1	2	17	1	1	4	4	3	2		2	
	세무																			
	전산																			
	공업		1				1				2						2			
	농업		7				6			1										
	녹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5					4		1										
	보건										2								2	
	식품위생										3								3	
	간호										1						1			
	환경										5								3	2
	시설		2			1		1			3				2	1				
	방송통신																			
	운전										2								1	1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2						2											
	선박기관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										14	6	6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해수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행정·별정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항만	지역	투자	항만	농	해양	산림	농수산물	주민	주민	복지	여성	문화	관광	체육	환경	자원	
		경제	경제	지원	물류	정	수산	녹지	물류	복지	생활	지원	아동	예	진흥	진흥	위생	순환	
계	계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공업·환경									2								1	1
	보건·식위									1								1	
8급	소계	33	5	6	3	2	9	5	3	46	7	4	4	4	8	5	5	9	
	행정	14	3	5	2	2			2	14	1		1	2	4	3		3	
	세무																		
	전산																		
	사회복지									1		1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6			1		5												
	보건									5								4	1
	환경									3								1	2
	시설	1							1	4				1	2	1			
	방송통신																		
	운전	1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4				1		1			2
	선박항해운영	2					2												
	선박기관운영	2					2												
	사무운영									2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서																		
행정·사회									12	6	3	3							
행정·세무	1		1																
세무·전산																			
전산·통신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9급	소 계	19	5	4	1	3	1	2	3	54	18	6	4	5	2	11	5	3
	행정	5	2				1		2	4		1		1	1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23	17	3	3					
	공업									2					1	1		
	농업	2				2												
	녹지	2						2										
	보건									2						1	1	
	환경									3							2	1
	시설	2		2														
	방송통신																	
	운전									1	1							
	위생									3						2		1
	시설관리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2		1				1		
	열관리운영									2						2		
사무운영	8	3	2	1	1				1	10		1	1	4		3	1	
전문경력관계										6			3			3		
나군	소 계									6			3			3		
	홍보연구관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체육진흥연구원									1						1		
	수영강사									2						2		
별정직계																		
6급	소 계																	
	비서																	
연구직계										1				1				
연구사	소 계									1				1				
	학예연구									1				1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건설	도시	건	공	건	교	재	토
		교통국 국계	계획 과	설 과	영 사 업 과	축 과	통 행 정 과	난 관 리 과	지 정 보 과
총 계		169	24	35	18	27	25	18	22
정 무 직 계									
일 반 직 계		169	24	35	18	27	25	18	22
3급	소 계								
	행 정								
4급	소 계	1	1						
	행 정								
	행 정 · 기 술	1	1						
5급	소 계	7	1	1	1	1	1	1	1
	행 정	1					1		
	시 설	2		1		1			
	행 정 · 사 회								
	행 정 · 농 업								
	행 정 · 환 경								
	행 정 · 시 설	4	1		1			1	1
	행 정 · 통 신								
	행 정 · 농 업 · 해 수								
	행 정 · 녹 지 · 시 설								
	행 정 · 해 수 · 시 설								
	공 업 · 보 건 · 환 경								
6급	소 계	38	6	7	4	6	6	4	5
	행 정	4					3	1	
	세 무								
	전 산								
	사 회 복 지								
	농 업								
	녹 지								
	해 양 수 산								
	보 건								
	시 설	14	3	2	2	4			3
	운 전								
	시 설 관 리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건설	도시	건	공	건	교	재	토
		설	시	건	공	건	통	난	지
		교	계	설	영	축	행	관	정
		통	획	과	사	과	정	리	보
		국	과	과	업	과	과	과	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전 기 운 영								
	기 계 운 영								
	선 박 항 해 운 영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행 정 · 전 산								
	행 정 · 사 회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농 업								
	행 정 · 녹 지								
	행 정 · 해 수								
	행 정 · 환 경								
	행 정 · 시 설	14	3	2	2	2	1	3	1
	행 정 · 별 정								
	전 산 · 시 설	1							1
	전 산 · 통 신								
	공 업 · 환 경								
	공 업 · 시 설								
	농 업 · 수 의								
	농 업 · 시 설	1		1					
	녹 지 · 시 설								
	해 수 · 환 경								
	보 건 · 식 위								
	보 건 · 환 경								
	행 정 · 세 무 · 사 회								
	행 정 · 전 산 · 통 신	1					1		
	행 정 · 농 업 · 해 수								
	행 정 · 보 건 · 환 경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행 정 · 녹 지 · 시 설								
	공 업 · 보 건 · 환 경								
	행 정 · 사 회 · 보 건 · 간 호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건설	도시	건	공	건	교	재	토
		교	통	국	시	설	영	축	통	난	지
계	과	계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7급	소 계	45	8	7	5	7	6	6	6	6	
	행 정	13	1	3	1	1	4	2	1		
	세 무										
	전 산										
	공 업										
	농 업										
	녹 지										
	수 의										
	해 양 수 산	1							1		
	보 건										
	식 품 위 생										
	간 호										
	환 경										
	시 설	29	7	4	4	5	1	3	5		
	방 송 통 신										
	운 전										
	시 설 관 리										
	통 신 운 영										
	기 계 운 영										
	선 박 항 해 운 영										
	선 박 기 관 운 영										
	사 무 운 영										
	행 정 · 세 무										
	행 정 · 전 산										
	행 정 · 사 회										
	행 정 · 공 업										
	행 정 · 농 업										
	행 정 · 해 수										
	행 정 · 보 건										
	행 정 · 환 경										
행 정 · 시 설	2					1	1				
행 정 · 별 정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건설교통국계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공업·환경								
	보건·식위								
8급	소계	47	6	9	6	7	10	4	5
	행정	6		1			3	1	1
	세무								
	전산	2					1		1
	사회복지								
	공업	5		2	2			1	
	농업								
	녹지								
	해양수산								
	보건								
	환경								
	시설	21	6	2	3	5	1	1	3
	방송통신								
	운전	3		2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2					1	1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								
	행정·시설	5		1	1	2	1		
	행정·사서								
	행정·사회								
	행정·세무								
세무·전산									
전산·통신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9급	소 계	31	2	11	2	6	2	3	5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1					1		
	농업								
	녹지								
	보건								
	환경								
	시설	16	2	3	2	5		2	2
	방송통신								
	운전	1		1					
	위생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9		3		1	1	1	3	
전문경력관 계									
나군	소 계								
	홍보연구관								
	청소년수련지도사								
	체육진흥연구원								
	수영강사								
별정직 계									
6급	소 계								
	비서								
연구직 계									
연구사	소 계								
	학예연구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2013. . . >

[별표2]

[의회사무국]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 계	의 회 사 무 국								
계		25	25								
일 반 직 계		24	24								
4급	소 계	1	1								
	행 정	1	1								
5급	소 계	3	3								
	행 정 · 별 정	3	3								
6급	소 계	5	5								
	행 정	4	4								
	행 정 · 농 업 · 시 설	1	1								
7급	소 계	5	5								
	행 정	4	4								
	시 설	1	1								
8급	소 계	4	4								
	행 정	3	3								
	전 산	1	1								
9급	소 계	6	6								
	속 기	2	2								
	운 전	2	2								
	통 신 운 영	1	1								
	기 계 운 영	1	1								
별 정 직 계		1	1								
6급	소 계	1	1								
	전 문 위 원	1	1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2013. . . >

[별표3]

[직속기관]

별 직 별	급	직렬별	기 관										
			합 계	보 건 소 계	보 건 사 업 과	건 강 관 리 과			농 업 기 술 센 터 계	농 촌 지 원 과	기 술 보 급 과		
계			136	94	65	29			42	21	21		
일 반 직 계			100	94	65	29			6	1	5		
4급	소 계		1	1	1								
	기 술		1	1	1								
5급	소 계		3	3	2	1							
	보 건		1	1	1								
	보 건 · 의 무		1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1								
6급	소 계		16	16	11	5							
	보 건 진 료		6	6	6								
	행 정 · 보 건		1	1		1							
	보 건 · 간 호		1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1								
	보 건 · 의 기 · 간 호		7	7	3	4							
7급	소 계		27	26	17	9			1		1		
	행 정		1	1	1								
	보 건		5	5	2	3							
	간 호		5	5	1	4							
	보 건 진 료		5	5	5								
	운 전		1	1	1								
	행 정 · 농 업		1						1		1		
	보 건 · 의 기 · 간 호		9	9	7	2							
8급	소 계		42	39	28	11			3	1	2		
	농 업		2						2		2		
	보 건		12	12	8	4							
	의 료 기 술		9	9	5	4							
	간 호		2	2	1	1							
	보 건 진 료		7	7	7								
	운 전		2	1	1				1	1			

별 직급	기관 직렬별	합	보	보	건			농	농	기		
		계	건	건	강			업	촌	술		
			소	사	관			기	지	보		
			계	업	리			술	원	급		
				과	과			센터	과	과		
								계				
	열 관리 운영	1	1	1								
	행정·보건	1	1	1								
	행정·간호	3	3	2	1							
	의기·간호	3	3	2	1							
9급	소 계	11	9	6	3			2		2		
	보건	6	6	5	1							
	의료 기술	1	1		1							
	운 전	1	1	1								
	시 설 관 리	1						1		1		
	농 립 운 영	1						1		1		
	사 무 운 영	1	1		1							
전 문 경 력 관 계		2						2	2			
나군	소 계	2						2	2			
	농기계교육교관	2						2	2			
연 구 직 계		2						2		2		
연 구 사	소 계	2						2		2		
	환 경 연 구	1						1		1		
	농 업 연 구	1						1		1		
지 도 직 계		32						32	18	14		
지도관	소 계	3						3	2	1		
	농 촌 지 도	3						3	2	1		
지도사	소 계	29						29	16	13		
	농 촌 지 도	29						29	16	13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2013. . >

[별표4]

[사업소]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	수	수	하		시	예	시	철		기	차
		계	도	도	수		설	슬	립	새		타	량
		계	사업소	과	과		관	의	도	생		사	등
		계	계	과	과		리	전	서	태		업	특
		계	계	과	과		사	당	관	관		소	사
		계	계	과	과		업	관	리	리		계	업
		계	계	과	과		소	리	관	관		계	소
		계	계	과	과		계	사	리	리		계	계
계		137	70	44	26		51	14	26	11		16	16
일 반 직 계		137	70	44	26		51	14	26	11		16	16
4급	소 계	2	1	1			1	1					
	행 정	1					1	1					
	행 정 · 기 술	1	1	1									
5급	소 계	6	2	1	1		3	1	1	1		1	1
	행 정	1					1	1					
	행 정 · 사 서	1					1		1				
	행 정 · 공 업	1										1	1
	행 정 · 시 설	1	1	1									
	행 정 · 녹 지 · 환 경	1					1			1			
6급	소 계	24	12	7	5		9	2	5	2		3	3
	행 정	5	2	2			3	1	1	1			
	공 업	2	1	1								1	1
	시 설	2	2	1	1								
	행 정 · 세 무	1										1	1
	행 정 · 사 서	4					4		4				
	행 정 · 공 업	1										1	1
	행 정 · 시 설	2	2	1	1								
	공 업 · 환 경	2	2	1	1								
	공 업 · 시 설	1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1					1	1					
7급	소 계	39	19	13	6		16	5	7	4		4	4
	행 정	13	3	2	1		7	3	1	3		3	3
	사 서	5					5		5				
	공 업	5	3	2	1		1		1			1	1
	보 건 간 호	1	1		1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합	수	도	하		시설	예술	시립	철새	기타	차량	
		계	소												
		계	계	계	과	과	수		관리	전당	서관	태관	사업	등록	
7급	환경	1							1			1			
	시설	4	4	2	2										
	시설관리														
	전기운영	1							1	1					
	기계운영	3	2	2					1	1					
	사무운영	4	4	4											
	공업·환경	1	1		1										
	공업·보건·환경	1	1	1											
8급	소계	32	19	11	8			8	2	5	1		5	5	
	행정	6	2	2				1	1				3	3	
	세무	1											1	1	
	사서	3						3		3					
	공업	4	4	2	2										
	시설	6	6	4	2										
	운전	1	1		1										
	전기운영	2	1	1					1	1					
	기계운영	3	2	1	1				1		1				
	열관리운영	2							2		1	1			
	사무운영	1	1	1											
	행정·공업	1												1	1
	공업·환경	2	2		2										
9급	소계	34	17	11	6			14	3	8	3		3	3	
	행정	2											2	2	
	사서	6						6		6					
	공업	2						2	2						
	보건														
	시설	2	2	1	1										
	운전	2	2	1	1										
	위생	1	1	1											
	시설관리	4	3	1	2								1	1	
	전기운영	3	1	1					2		1	1			
	기계운영	3	3	2	1										
	열관리운영	2							2	1	1				
	화공운영	1	1	1											
	사육운영	2							2			2			
사무운영	4	4	3	1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2013.

[별표5]

[읍면동]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	읍	옥	면	옥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옥	옥
		계	계	읍	계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계		308	13	13	118	11	11	11	11	14	11	11	11	15	12
일 반 직 계		308	13	13	118	11	11	11	11	14	11	11	11	15	12
5급	소 계	27	1	1	10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보건	2													
	행정·사회·의기	1													
	행정·사회·시설	4													
	행정·사서·시설	2													
	행정·공업·시설	2													
	행정·농업·녹지	1			1								1		
	행정·농업·보건	1													
	행정·농업·간호	2			2	1	1								
	행정·농업·환경	1			1					1					
	행정·해수·시설	1													
	행정·보건·의기	1													
	행정·의기·시설	1													
	행정·시설·통신	1													
	행정·사회·공업·농업	1			1								1		
	행정·공업·농업·녹지	1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1						
	행정·농업·해수·시설	2	1	1	1									1	
	행정·농업·해수·환경	1			1										1
행정·농업·간호·환경	1			1						1					
6급	소 계	57	3	3	31	3	3	3	3	3	3	3	3	4	3
	행 정	13													
	선 박 항 해 운 영														
	항해운영·기관운영	1			1									1	
	행 정 · 세 무														
	행 정 · 사 회	17	1	1	9	1	1	1	1	1	1	1	1	1	
	행 정 · 공 업	1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	읍	읍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계	계	구 읍	계	산 면	현 면	피 면	수 면	야 면	정 면	산 면	포 면	도 면	서 면
	행정·농업	15	1	1	12	2	2	1	1	1	2	1	1		1
	행정·보건	2			2				1					1	
	행정·환경														
	행정·농업·시설	3	1	1	2			1		1					
	행정·해수·시설	1			1									1	
	행정·세무·농업·복지	2			2							1	1		
	행정·사회·해수·시설	1			1										1
	행정·농업·해수·시설	1			1										1
7급	소 계	80	4	4	31	3	2	3	3	5	3	3	2	3	4
	행정	30	1	1	5	1			1	1	1				1
	사회복지	18	1	1	8	1	1	1	1	1	1	1			1
	선박항해운영	1			1									1	
	선박기관운영	1			1									1	
	행정·세무	5													
	행정·사회	7													
	행정·농업	11	1	1	10		1	1	1	2	1	1	1	1	1
	행정·시설	7	1	1	6	1		1		1		1	1		1
8급	소 계	62	2	2	18	1	2	1	2	2	1	1	2	4	2
	행정	22	1	1											
	세무														
	사회복지	8			2				1				1		
	시설	1			1									1	
	선박항해운영	1			1									1	
	행정·사회	15			2								1	1	
	행정·농업	10	1	1	7	1	1	1		1		1		1	1
	행정·시설	5			5		1		1	1	1				1
9급	소 계	82	3	3	28	3	3	3	2	3	3	3	3	3	2
	행정	34	1	1	9	1	1	1	1	1	1	1	1	1	
	사회복지	34	1	1	8	1	1	1		1	1	1		1	1
	농업	1			1								1		
	선박항해운영	1			1									1	
	시설관리·사무	12	1	1	9	1	1	1	1	1	1	1	1		1

직급	직렬별	기관별	동	해	월	삼	신	중	흥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계	신	명	학	풍	양	남	촌	암	암	정	송	운	운	운	룡	성
			계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계			177	8	9	9	9	8	10	11	9	9	8	17	11	17	17	12	13
일반직계			177	8	9	9	9	8	10	11	9	9	8	17	11	17	17	12	13
5급	소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보건		2						1						1				
	행정·사회·의기		1													1			
	행정·사회·시설		4		1	1				1							1		
	행정·사서·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간호																		
	행정·농업·환경																		
	행정·해수·시설		1	1															
	행정·보건·의기		1										1						
	행정·의기·시설		1								1								
	행정·시설·통신		1									1							
	행정·사회·공업·농업																		
	행정·공업·농업·녹지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농업·녹지·간호																		
	행정·농업·해수·시설																		
	행정·농업·해수·환경																		
행정·농업·간호·환경																			
6급	소계		23	1	1	1	1	1	1	2	1	1	1	2	2	2	2	2	
	행정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선박항해운영																		
	항해운영·기관운영																		
	행정·세무																		
	행정·사회		7							1				1	1	1	1	1	
	행정·공업		1															1	

직별	직급	직렬별	기관별																
			동계	해신동	월명동	삼학동	신풍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수·시설																	
		행정·세무·농업·복지																	
		행정·사회·해수·시설																	
		행정·농업·해수·시설																	
7급		소계	45	3	3	3	3	2	3	3	3	2	1	3	3	3	4	3	3
		행정	24	2	1	1	2	1	2	1	2	2	1	1	2	1	2	1	2
		사회복지	9	1			1	1		1	1			1	1			1	1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행정·세무	5							1				1		1	1	1	
		행정·사회	7		2	2			1							1	1		
		행정·농업																	
행정·시설																			
8급		소계	42	1	2	2	2	2	2	2	2	3	2	4	4	3	5	3	3
		행정	21	1	1	1	1	2	1	2	1	1	1	2	2	1	2	1	1
		세무																	
		사회복지	6		1	1			1			1				1	1		
		시설																	
		선박항해운영																	
		행정·사회	13				1				1	1	1	1	2	1	2	2	1
		행정·농업	2											1					1
행정·시설																			
9급		소계	51	2	2	2	2	2	3	3	2	2	3	7	1	8	5	3	4
		행정	24	1	1	1	1	1	1	2	1	1	2	3		3	2	2	2
		사회복지	25	1	1	1	1	1	2	1	1	1	1	4	1	4	2	1	2
		농업																	
		선박항해운영																	
		시설관리·사무	2													1	1		

현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직속부서계	50명(1000원)	간사(1000원)	정무(1000원)						
일 반 직 계		647	46	7	13	16						
5급	소 계											
	해양수산											
	행정해수시설											
6급	소 계	160										
	행정	53										
	시설관리											
	운전											
	전기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사무운영											
	행정·별정	2										
	7급	소 계	212									
행정		89										
식품위생		1										
시설관리												
운전												
통신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행정·별정	2											
8급	소 계	152	7			3						
	위생											
	운전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9급	소 계	84	6	1	1	3						
	위생											
	시설관리											
	운전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일 반 직 계		739	52	9	14	19						
5급	소 계											
	해양수산											
	행정해수시설											
6급	소 계	166										
	행정	55										
	시설관리	1										
	운전	1										
	전기운영	1										
	기계운영	1										
	선박항해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별정											
	7급	소 계	232									
행정		92										
식품위생		3										
시설관리		1										
운전		6										
통신운영		1										
기계운영		2										
선박항해운영		2										
선박기관운영		1										
사무운영		4										
행정·별정												
8급	소 계	177	8			4						
	위생	1										
	운전	4										
	건축운영	1										
	통신운영	2										
	전화상담운영	1	1			1						
	전기운영	1										
	기계운영	5										
	선박항해운영	2										
	선박기관운영	2										
사무운영	6											
9급	소 계	145	11	3	2	5						
	위생	3										
	시설관리	2										
	운전	3										
	통신운영	1	1	1								
	전화상담운영	2	2			2						
	전기운영	4										
	기계운영	4	1	1								
	열관리운영	4										
	사무운영	38	1		1							

현행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직속부서계	90만1000원	감사1000원	정근90만1000원								
전	전문경력관계													
	소 계													
	나급													
	홍보연구관													
	청소차량지도사													
별	정 직 계	12	1	1										
6급	소 계	3	1	1										
	홍보연구관	1	1	1										
	문화재연구원	1												
7급	소 계	9												
	보건위생감시원	2												
	청소차량지도사	3												
	체육진흥연구원	1												
	박물관운영요원	1												
수 영 강 사	2													
연 구 직 계														
연구	소 계													
	학 예 연구													
기 능 직 계	100	6	2	1	3									
6급	소 계	6												
	전 기	1												
	기 계	1												
	운 전	1												
	선 박 항 해	1												
	사 무	1												
	조 무	1												
7급	소 계	17												
	통 신	1												
	기 계	2												
	운 전	6												
	선 박 항 해	2												
	선 박 기 관	1												
	사 무	3												
8급	소 계	25	1			1								
	건 축	1												
	통 신	2												
	전 화 상 담	1	1			1								
	전 기	1												
	기 계	5												
	운 전	9												
	선 박 항 해	2												
	선 박 기 관	2												
9급	소 계	61	5	2	1	2								
	통 신	1	1	1										
	전 화 상 담	2	2			2								
	전 기	4												
	기 계	6	1	1										
	열 관 리	4												
	운 전	4												
	위 생	3												

현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자치행정국계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자치행정국계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일 반 직 계		163	34	20	15	29	23	20	9		일 반 직 계		194	46	22	23	31	24	24	14	10			
5급	소 계										5급	소 계												
	해양수산											5급	해양수산											
	행정해수시설												행정해수시설											
6급	소 계	37	7		3						6급	소 계	40	8		5								
	행정											6급	행정											
	시설관리												시설관리											
	운전											6급	운전	1			1							
	전기운영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6급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사무운영											6급	사무운영											
	행정·별정												행정·별정											
7급	소 계	62	14	8	7			6			7급	소 계	71	19	9	9			7					
	행정	39	11	6								7급	행정	41	12	7								
	식품위생												식품위생											
	시설관리											7급	시설관리											
	운전												운전	4	1	1	1					1		
	통신운영											7급	통신운영	1	1									
	기계운영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7급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7급	사무운영	3	2		1							
행정·별정	2	1	1							행정·별정														
8급	소 계	38	8		3		5				8급	소 계	43	10		5		6						
	위생											8급	위생	1	1									
	운전												운전											
	건축운영											8급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8급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8급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8급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사무운영	3				2		1							
9급	소 계	16	2		1	5	2				9급	소 계	30	6	1	3	7		5	2	1			
	위생											9급	위생											
	시설관리												시설관리	1	1									
	운전											9급	운전	1			1							
	통신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9급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9급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열관리운영	2	2									
사무운영										9급	사무운영	10	1	1	1	2			3	1	1			

현행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자치행정국계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자치행정국계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나급	홍보연구관										나급	홍보연구관									
	청소차량지도사										청소차량지도사										
	체육진흥연구원										체육진흥연구원										
	수영강사										수영강사										
6급	정직계										6급	정직계									
	소 계										소 계										
	홍보연구관										홍보연구관										
	문화재연구원										문화재연구원										
7급	소 계										7급	소 계									
	보건위생감시원										보건위생감시원										
	청소차량지도사										청소차량지도사										
	체육진흥연구원										체육진흥연구원										
	박물관운영요원										박물관운영요원										
수영강사										수영강사											
연구사	연구직계										연구사	연구직계									
	소 계										소 계										
기능직계	소 계	31	12	2	8	2	1	4	1		기능직계	소 계									
	전반기	1	1		2						전반기										
6급	반기	1			1						반기										
	운전	1			1						운전										
	선박항해사										선박항해사										
	사무										사무										
	조무										조무										
7급	소 계	9	5	1	2			1			7급	소 계									
	통신	1	1								통신										
	반기	1	1								반기										
	운전	4	1	1	1			1			운전										
	선박항해사										선박항해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사무	2	1		1						사무										
조무	1	1								조무											
8급	소 계	5	2		2			1			8급	소 계									
	건축	1	1								건축										
	통신										통신										
	전화상담										전화상담										
	반기										반기										
	기계										기계										
	운전	3			2			1			운전										
	선박항해사										선박항해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위생	1	1								위생											
9급	조무										조무										
	소 계	14	4	1	2	2		3	1		소 계										
	통신										통신										
	전화상담										전화상담										
	반기										반기										
	기계										기계										
열관리	열관리	2	2								열관리										
	운전	1			1						운전										
	위생										위생										

현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복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복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일
	5급	소 계					1					5급	소 계					1				
		해양수산					1						5급	해양수산								
		행정해수시설												행정해수시설					1			
	6급	소 계	33				5					6급	소 계	34				6				
		행정											행정									
		시설관리											시설관리									
		운전											운전									
		전기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1				1				
		사무운영											사무운영									
		행정·별정											행정·별정									
	7급	소 계	39				7					7급	소 계	42				10				
		행정											행정									
		식품위생											식품위생									
		시설관리											시설관리									
		운전											운전									
		통신운영											통신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2				2				
		선박기관운영											선박기관운영	1				1				
		사무운영											사무운영									
		행정·별정											행정·별정									
	8급	소 계	28				5	4				8급	소 계	33				9	5			
		위생											위생									
		운전											운전	1						1		
		건축운영											건축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2				2				
		선박기관운영											선박기관운영	2				2				
		사무운영											사무운영									
	9급	소 계	11	2	2		2			2		9급	소 계	19	5	4	1	3				3
		위생											위생									
		시설관리											시설관리									
		운전											운전									
		통신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사무운영	8	3	2	1	1				1

현행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복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복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전문경력관계
나급	소 계										소 계											
	홍보연구관										홍보연구관											
	청소차량지도사										청소차량지도사											
	체육진흥연구원										체육진흥연구원											
	수영강사										수영강사											
별정직계										별정직계												
6급	소 계										소 계											
	홍보연구관										홍보연구관											
	문화재연구원										문화재연구원											
	보건위생감시원										보건위생감시원											
	청소차량지도사										청소차량지도사											
7급	체육진흥연구원										체육진흥연구원											
	박물관운영요원										박물관운영요원											
	수영강사										수영강사											
	연구직계										연구직계											
연구사	소 계										소 계											
	학예연구										학예연구											
기능직계		17	3	2	1	1	8	1	1	기능직계												
6급	소 계	1					1				소 계											
	전기계										전기계											
	운전										운전											
	선박항해사무원	1					1				선박항해사무원											
	조무원										조무원											
7급	소 계	3					3				소 계											
	통신										통신											
	운전										운전											
	선박항해사무원	2					2				선박항해사무원											
	선박기관사무원	1					1				선박기관사무원											
8급	조무원										조무원											
	소 계	5					4	1			소 계											
	건축										건축											
	통신										통신											
	전화상담										전화상담											
	전기계										전기계											
	운전	1						1			운전											
9급	선박항해사무원	2					2				선박항해사무원											
	선박기관사무원	2					2				선박기관사무원											
	위생										위생											
	조무원										조무원											
	소 계	8	3	2	1	1			1		소 계											
9급	통신										통신											
	전화상담										전화상담											
	전기계	1	1								전기계											
	열관리										열관리											
	운전	1		1							운전											

현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일 반 직 계		173	39	21	21	15	18	16	26	17	일 반 직 계		208	40	23	22	21	19	26	30	27		
5급	소 계										5급	소 계											
	해양수산											해양수산											
	행정해수시설											행정해수시설											
6급	소 계	41								4	6급	소 계	42									5	
	행정	7				3						행정	9			1	4						
	시설관리											시설관리	1									1	
	운전											운전											
	전기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사무운영											사무운영											
	행정·별정	2				1	1					행정·별정											
	소 계	49					5			10		5	소 계	57				6				13	9
행정	16					3					행정	17				4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3									3		
시설관리											시설관리	1									1		
운전											운전	2									1	1	
통신운영											통신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사무운영	1										1	
행정·별정											행정·별정												
소 계	40					3	7	4		6	소 계	46				4	8	5			9		
위생											위생												
운전											운전												
건축운영											건축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4				1		1				2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사무운영	2						1				1	
소 계	34	17	4	3	1			2	4	1	소 계	54	18	6	4	5			11	5	3		
위생											위생	3							2		1		
시설관리											시설관리												
운전											운전	1	1										
통신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기계운영	2		1						1			
열관리운영											열관리운영	2								2			
사무운영											사무운영	10		1	1	4				3	1		

현행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나급	소 계										소 계		6			3			3		
	홍보연구관										홍보연구관										
	청소차량지도사										청소차량지도사		3			3					
	체육진흥연구원										체육진흥연구원		1							1	
	수영강사										수영강사		2							2	
별정직계			3	2			3	2		별정직계											
6급	소 계				1						소 계										
	홍보연구관										홍보연구관										
	문화재연구원					1					문화재연구원										
7급	소 계			3	1			3	2		소 계										
	보건위생감시원								2		보건위생감시원										
	청소차량지도사			3							청소차량지도사										
	체육진흥연구원							1			체육진흥연구원										
	박물관운영요원				1						박물관운영요원										
수영강사								2		수영강사											
연구직계										연구직계		1				1					
연구사	소 계										소 계		1				1				
	학예연구										학예연구		1				1				
기능직계	1	2	1	5	1	10	2	10		기능직계											
6급	소 계								1		소 계										
	전기기계										전기기계										
	운전										운전										
	선박항해사										선박항해사										
	사무								1		사무										
7급	소 계							1	4		소 계										
	통신										통신										
	기기계								1		기기계										
	운전							1	1		운전										
	선박항해사										선박항해사										
	선박기관사										선박기관사										
	사무								1		사무										
8급	소 계				1	1	1		3		소 계										
	건축										건축										
	통신										통신										
	전화상담										전화상담										
	전기기계				1		1		2		전기기계										
	운전								1		운전										
	선박항해사										선박항해사										
	선박기관사										선박기관사										
9급	소 계	1	2	1	4		9	1	2		소 계										
	통신										통신										
	전화상담										전화상담										
	전기기계						1		1		전기기계										
	열관리							1	2		열관리										
	운전	1									운전										
위생						2		1		위생											

현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일
5급	소 계	146	24	26	19	16	19			100	35	27	25	18	22					
	해양수산																			
	행정해수시설																			
6급	소 계	37			5					38				6						
	행정																			
	시설관리																			
	운전																			
	전기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사무운영									1				1						
	행정·별정																			
7급	소 계																			
	행정																			
	식품위생																			
	시설관리																			
	운전																			
	통신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행정·별정																				
8급	소 계	39	6		6	3				47	9		10	4						
	위생																			
	운전									3	2		1							
	건축운영																			
	통신운영									2			1	1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1			1								
9급	소 계	17	3	5	1	2	2			31	11	6	2	3	5					
	위생																			
	시설관리									1	1									
	운전									1	1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9	3	1	1	1	3						

현행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건설교통부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건설교통부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전문경력관계	소 계											전문경력관계	소 계												
	홍보연구관												나군	홍보연구관											
	청소차량지도사													청소차량지도사											
	체육진흥연구원													체육진흥연구원											
	수영강사													수영강사											
별정직계	소 계											별정직계	소 계												
	홍보연구관												6급	홍보연구관											
	문화재연구원													문화재연구원											
	소 계													7급	소 계										
보건위생감시원											보건위생감시원														
청소차량지도사											청소차량지도사														
체육진흥연구원											체육진흥연구원														
박물관운영요원											박물관운영요원														
수영강사												수영강사													
연구직계	소 계											연구직계	소 계												
	학예연구												학예연구												
기능직계	소 계	23	11	1	6	2	3					기능직계	소 계												
	전 기	1			1								6급	전 기											
	기 계													기 계											
	운 전													운 전											
	선 박 항 해													선 박 항 해											
	사 무	1			1									사 무											
	조 무												조 무												
	소 계												7급	소 계											
	통 신													통 신											
	기 계													기 계											
	운 전													운 전											
	선 박 항 해													선 박 항 해											
	선 박 기 관												선 박 기 관												
사 무											사 무														
조 무											조 무														
8급	소 계	8	3		4	1						8급	소 계												
	건 축												건 축												
	통 신	2			1	1							통 신												
	전 화 상 담												전 화 상 담												
	전 기	1	1										전 기												
	기 계	1			1								기 계												
	운 전	4	2		2								운 전												
	선 박 항 해												선 박 항 해												
선 박 기 관											선 박 기 관														
9급	위 생											9급	위 생												
	조 무												조 무												
	소 계	14	8	1	1	1	3						소 계												
	통 신												통 신												
	전 화 상 담												전 화 상 담												
	전 기	2	2										전 기												
기 계	2	2									기 계														
열 관 리											열 관 리														
운 전	1	1									운 전														
위 생											위 생														

현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합계	의회사무국	직급별	기관별	합계	의회사무국
	직렬별				직렬별		
일반직계		19	19	일반직계		24	24
6급	소계	6	6	6급	소계	5	5
	행정	3	3		행정	4	4
	행정·별정	2	2		행정·별정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별정	1	1		행정·농업·시설·별정		
9급	소계			9급	소계	6	6
	속기				속기	2	2
	운전				운전	2	2
	통신운영				통신운영	1	1
	기계운영				기계운영	1	1
별정직계				별정직계		1	1
6급	소계			6급	소계	1	1
기능직계		6	6	기능직계			
9급	소계	6	6	9급	소계		
	통신	1	1		통신		
	기계	1	1		기계		
	운전	2	2		운전		
	사무	2	2		사무		

현행										개정안												
기관별		합계	보건소계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계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기관별		합계	보건소계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계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계				46	48									65	29							
일반직계		90	89	42	47	1		1			일반직계		100	94	65	29	6	1	5			
5급	소계			1	2						5급	소계			2	1						
	보건의무	1	1		1							보건의무	1	1	1							
6급	소계			5	11						6급	소계			11	5						
	보건진료				6							보건진료			6							
7급	소계	26	25	11	14						7급	소계	27	26	17	9						
	보건진료				5							보건진료			5							
	운전											운전	1	1	1							
8급	소계	37	37	19	18						8급	소계	42	39	28	11	3	1	2			
	농업											농업	2				2		2			
	보건진료				7							보건진료			7							
	운전											운전	2	1	1		1	1				
9급	소계	7	7	5	2						9급	소계	11	9	6	3	2		2			
	시설관리											시설관리	1				1		1			
	농림운영											농림운영	1		1			1		1		
	사무운영											사무운영	1	1		1						
전문경력관계											전문경력관계		2				2	2				
나군	소계										나군	소계	2				2	2				
	농기계교육교관											농기계교육교관	2				2	2				
별정직계		2				2	2				별정직계											
7급	소계	2				2	2				7급	소계										
	농기계교육교관	2				2	2					농기계교육교관										
연구직계		3				3	3				연구직계		2				2	2				
연구사	소계	3				3	3				연구사	소계	2				2	2				
	농업연구	2				2	2					농업연구	1				1	1				
지도직계		33				33	15				지도직계		32				32	14				
지도사	소계	30				30	14				지도사	소계	29				29	13				
	농촌지도	30				30	14					농촌지도	29				29	13				
기능직계		8	5	4	1	3	1	2			기능직계											
7급	소계	1	1	1							7급	소계										
	운전	1	1	1								운전										
8급	소계	3	2	2		1	1				8급	소계										
	열관리	1	1	1								열관리										
9급	운전	2	1	1		1	1				9급	운전										
	소계	4	2	1	1	2	2					소계										
	농림	1				1	1					농림										
	사무	1	1		1							사무										
조무		1				1	1				조무		1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합계	수도사업소개	수도과	하수과	시설관리사업소개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철새생태관리과	기타사업소개	차량등록사업소	기관별		합계	수도사업소개	수도과	하수과	시설관리사업소개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철새생태관리과	기타사업소개	차량등록사업소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일	반	직	계	96	43	24	19	38	10	22	6	15	15	일	반	직	계	137	70	44	26	51	14	26	11	16	16	
	소	계	정	29	12	6		13	3		3			소	계	정	39	19	13		16	5		4				
	행	기	운	11	2	1		6			2			행	기	운	13	3	2		7			3				
	전	기	운											전	기	운	1			1	1							
	기	계	운											기	계	운	3	2	2		1	1						
	사	무	운											사	무	운	4	4	4									
	소	계	정	23	14	8	6	4	1	3				소	계	정	32	19	11	8	8	2	5	1				
	운	전	기											운	전	기	1	1		1								
	전	기	운											전	기	운	2	1	1		1	1						
	기	계	운											기	계	운	3	2	1	1	1		1					
	열	관	리											열	관	리	2			2			1	1				
	사	무	운											사	무	운	1	1	1									
	소	계	정	12	2	1	1	8	2	6		2	2	소	계	정	34	17	11	6	14	3	8	3	3	3		
	위	시	설											위	시	설	1	1	1									
	관	리	전											관	리	전	4	3	1	2					1	1		
	운	전	기											운	전	기	2	2	1	1								
	전	기	운											전	기	운	3	1	1		2		1	1				
	기	계	운											기	계	운	3	3	2	1								
	열	관	리											열	관	리	2			2	1	1						
	화	공	운											화	공	운	1	1	1									
	사	육	운											사	육	운	2							2				
	사	무	운											사	무	운	4	4	3	1								
별	정	직	계	1	1	1								별	정	직	계											
	소	계	정	1	1	1								소	계	정												
	공	기	업	1	1	1								공	기	업												
	연	구	직	1				1			1			연	구	직												
	소	계	정	1				1			1			소	계	정												
	학	예	연	1				1			1			학	예	연												
	기	능	직	39	26	19	7	12	4	4	4	1	1	기	능	직												
	소	계	정	8	6	6		2	2					소	계	정												
	전	기	계	1				1	1					전	기	계												
	기	계	정	4	3	3		1	1					기	계	정												
	사	무	운	1	1	1								사	무	운												
	조	무	운	2	2	2								조	무	운												
	소	계	정	9	5	3	2	4	1	2	1			소	계	정												
	전	기	계	2	1	1		1	1					전	기	계												
	기	계	정	3	2	1	1	1		1				기	계	정												
	열	관	리	2				2		1	1			열	관	리												
	운	전	기	1	1		1							운	전	기												
	조	무	운	1	1	1								조	무	운												
	소	계	정	22	15	10	5	6	1	2	3	1	1	소	계	정												
	전	기	계	3	1	1		2		1	1			전	기	계												
	기	계	정	4	4	3	1							기	계	정												
	열	관	리	2				2	1	1				열	관	리												
	운	전	기	2	2	1	1							운	전	기												
	화	공	운	1	1	1								화	공	운												
	사	육	운	2				2			2			사	육	운												
	위	시	생	1	1	1								위	시	생												
	사	무	운	3	3	2	1							사	무	운												
	조	무	운	4	3	1	2				1	1		조	무	운												

현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읍계	유구읍	면계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읍계	유구읍	면계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일반직계	291	12	12	104	10	10	10	10			10	13	일반직계	308	13	13	118	11	11	11	11
5급	행정공업농업복지										5급	행정공업농업복지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행정공업농업환경											
	행정농업복지교								1			행정농업복지교											
	행정농업해수환경											행정농업해수환경											
	행정농업보건환경											행정농업보건환경											
	행정농업기초환경											행정농업기초환경											1
6급	소계	56			30						6급	소계	57			31							
	향해운영기관운영											향해운영기관운영	1			1							
7급	소계	78			29						7급	소계	80			31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1			1							
	선박기관운영										선박기관운영	1			1								
8급	소계	61			17						8급	소계	62			18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1			1							
9급	소계	69	2	2	18	2	2	2	1	2	9급	소계	82	3	3	28	3	3	3	2	3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1			1							
	시설관리·사무										시설관리·사무	12	1	1	9	1	1	1	1	1	1		
기능직계	17	1	1	14	1	1	1	1	1	1	기능직계												
6급	소계	1			1						6급	소계											
	선박항해선박기관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7급	소계	2			2						7급	소계											
	선박항해	1			1							선박항해											
	선박기관	1			1						선박기관												
8급	소계	1			1						8급	소계											
	선박항해	1			1							선박항해											
9급	소계	13	1	1	10	1	1	1	1	1	9급	소계											
	선박항해	1			1							선박항해											
	사무·조무	12	1	1	9	1	1	1	1	1	사무·조무												

현										개정안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성산면	나포면	유곡면	옥서면	동계	남양면	남양읍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성산면	나포면	유곡면	옥서면	동계	남양면	남양읍				
		일반직계		10	10	10	11	175	16	16					일반직계		11	11	11	15	12	177	17
5급	행정공무원부직										5급	행정공무원부직				1							
	행정공무원합형											행정공무원합형											
	행정농업부직											행정농업부직											
	행정농업해수합형											행정농업해수합형											
	행정농업보건합형				1							행정농업보건합형											
	행정농업기초합형											행정농업기초합형											
6급	소계			3							6급	소계				4							
	향해운영기관운영											향해운영기관운영					1						
7급	소계			1							7급	소계				3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1						
8급	소계			3							8급	소계				4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1						
9급	소계	2	2	2	1	49	7	4			9급	소계	3	3	3	3	2	51	8	5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1						
	시설관리·사무										시설관리·사무	1	1	1		1	2	1	1				
가능직계		1	1	5	1	2	1	1			가능직계												
6급	소계			1							6급	소계											
	선박항해선박관				1							선박항해선박관											
7급	소계			2							7급	소계											
	선박항해				1							선박항해											
8급	소계			1							8급	소계											
	선박항해				1							선박항해											
9급	소계	1	1	1	1	2	1	1			9급	소계											
	선박항해				1							선박항해											
	사무·조무	1	1		1	2	1	1			사무·조무												

#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국·소별 및 과별 정원 변동사항을 개정취지에 맞게 개편하고자함

##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동없음) : 1,375명 ⇒ 1,375명
  - 정무직 계 : 1명
  - 일반직 계 : 1,143명 → 1,328명(+185)
  - 기능직 계 : 179명 → 0명(△179)
  - 전문경력관 계(신설) → 9명(+9)
  - 별정직 계 : 15명 → 2명(△13)
  - 연구직 : 4명 → 3명(△1)
  - 지도직 : 33명 → 32명(△1)
- 과별 정원변경 내역 : 붙임참고

##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3년 11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306호

##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정6급 상당으로”를 “지방사회복지주사로”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별정6급 상당으로”를 “지방학예연구사”로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1.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 개정 등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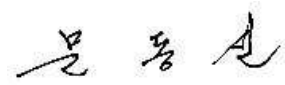
- 별정직 개편에 따른 업무계장 직급사항 변경
  - 제23조(여성아동복지과) 2항  
청소년계장 :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별정6급상당 삭제
  - 제24조(문화예술과) 2항  
박물관관리계장 : 지방행정주사,지방학예연구사 ←별정6급상당 삭제

##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예산없음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3년 11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307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7~9인이내”를 “16~20이내”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
5. 시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인사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
7. 그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u>7~9인이내</u>로 구성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u>인사정책에 관한 사항</u></p> <p>2. <u>시장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 의결</u></p> <p>3. <u>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인사관장 사항</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4조(구성) ①----- ----- <u>16~20이내</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능) ----- -----.</p> <p>1. <u>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u></p> <p>2. <u>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u></p> <p>3. <u>승진임용의 사전심의</u></p> <p>4. <u>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결</u></p> <p>5. <u>시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u></p> <p>6. <u>인사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u></p> <p>7. <u>그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u></p>

#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관련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인사위원회 위원수 개정

- (현행)위원장을 포함하여 7~9인 이내로 구성
- (개정)위원장을 포함하여 16~20인 이내로 구성

### 나. 인사위원회 기능 개정

- (현행) 1.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 2. 시장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의결
  -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인사관장 사항
- (개정)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 4.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
  - 5. 시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 6. 인사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
  -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군산시 공고 제2013- 2011호

군산시정책실명제운영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안전행정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개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신설

- 위원장 포함 10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 시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 위촉직 위원-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촉

####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안 제5조) - 전부개정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4.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절차(안 제6조) - 신설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제출 : 사업부서 → 총괄관리부서
- 총괄관리부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사업부서에 통보

####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안 제7조)- 전부개정

- 총괄관리부서 (市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 설치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 공개
- 사업부서 (市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공개

#### 마. 정책실명제 운영 실태점검(안 제8조) - 신설

-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

###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454-2305, 팩스 452-815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 (전화 454-2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군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 시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4.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점검)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13-2016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 군 산 시 장

## 군산근대역사박물관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박물관 운영범위를 인근 근대건축물 및 진포해양테마공원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을 관리하고자 함
- 나. 박물관 관람료 및 감면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국가시책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다. 무료관람 대상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의 혜택범위를 넓히고자 함
- 라. 박물관 시설사용 및 별도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운영관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마. 박물관 이용자의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박물관과 근대건축물(조선은행, 일본제18은행 등)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연계 운영에 따른 통합관리 근거 마련 - 박물관 범위 확대
- 통합운영관리에 따른 관람료 구분 기준 마련 및 요금 변경
  - 통합권, 개별권(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선은행, 18은행) 이원화 적용
- 국가시책에 따른 관람료 감면대상자 확대 적용 근거 마련
  - 그린카드소지자 등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무료관람 범위 확대
- 박물관 시설사용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 시설물 사용허가 근거, 설치 가능 시설물 예시화 등
- 박물관 이용자의 구분 조정
  - 청소년/어린이,군인 ⇒ 청소년,군인/어린이

### 3. 의견제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운영조례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030 군산시 해망로 240(장미동 1-67번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전화 : 063-454-7870,  
 FAX : 063-443-828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박물관관리계(전화 063-454-787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 인근 근대건축물 전시 공간과 진포해양테마공원을 포함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제8조제1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과 상이 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제8조제1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시설사용·설치) ① 박물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뮤지엄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관 랑 료(제7조 제1항과 관련)

(단위: 원)

## 【 통합권(박물관/조선은행/18은행/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3,000	2,000	
청소년,군인	2,000	1,000	
어 린 이	1,000	500	

## 【 개별권(박물관)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소년,군인	1,000	700	
어 린 이	500	300	

## 【 개별권(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700	
청소년,군인	700	400	
어 린 이	300	200	

## 【 개별권(조선은행, 18은행) 】 \* 건물별 개별 징수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어 린 이	200	100	

[별표 2]

**관람료 감면(제7조 제3항과 관련)**

(단위: 원)

**【 군산시민 통합권(박물관/조선은행/18은행/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소년,군인	1,000	500	
어 린 이	500	400	

**【 군산시민 개별권(박물관)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500	
청소년,군인	500	300	
어 린 이	300	200	

**【 군산시민 개별권(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어 린 이	200	100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 국가시책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시 각 사업별 별도 할인을 적용

신·구조문 대비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p> <p>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전시공간을 말한다.</p> <p>2 ~ 9 (생략)</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p> <p>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 인근 근대건축물 전시 공간과 진포해양테마공원을 포함한다.</p> <p>2 ~ 9 (현행과 같음)</p>
<p>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p> <p>④ (생략)</p>	<p>제7조(관람료) ①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p> <p>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p> <p>4 ~ 7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무료관람 등)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p> <p>3.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시설사용) 박물관의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카페테리아 등 시설에 대한 임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p>	<p>제32조(시설사용·설치) ① 박물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카페테리아</p> <p>2. 뮤지엄샵</p> <p>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③ 시설에 대한 임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p>

군산시 고시 제2013-136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1. 1.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문화동 셀브르타운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회사명/대표 : (주)종수가 / 대표 : 오인권
  -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182, 운정빌딩 4층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문화동 916-7,6,13
  - 나. 대지면적 : 994.7m<sup>2</sup>
  - 다. 건축면적 : 384.8m<sup>2</sup>
  - 라. 연 면 적 : 2,370.78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1동 8층, 28세대
    - 84.2545형(전용면적 : 59.7202m<sup>2</sup>) : 21세대
    - 86.6950형(전용면적 : 61.4500m<sup>2</sup>) : 7세대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업비 : 3,700,000천원
  - 아. 사업기간 : 2013. 05월 ~ 2014. 05월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 변경 내용 : 시공사 변경
  - 당 초 : (주)신강건설
  - 변 경 : (유)현승종합건설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3)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3 - 138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1.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조촌동에코리움아파트
2. 사업주체
  - 1) 명 칭 : (주)미르건설
  - 2) 대표자 : 김종권
  - 3)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2-4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52-1번지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 나. 대지면적 : 3,125.70m<sup>2</sup>
  - 다. 건축면적 : 758.4044m<sup>2</sup>
  - 라. 연 면 적 : 5,797.8110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2동 11층, 60세대
    - 전용 70.7903m<sup>2</sup> 40세대
    - 전용 70.7903m<sup>2</sup> 20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 업 비 : 9,530,060천원
  - 아. 사업기간 : 2013. 09. ~ 2014. 11.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승인일 : 2013년 7월 15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3 - 139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1.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조촌동 에코리움아파트
2. 사업주체 (변경없음)
  - 1) 명 칭 : (주)미르건설
  - 2) 대표자 : 김종권
  - 3)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2-4
3. 사업내용 (변경없음)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52-1번지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 나. 대지면적 : 3,125.70m<sup>2</sup>
  - 다. 건축면적 : 758.4044m<sup>2</sup>
  - 라. 연 면 적 : 5,797.8110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2동 11층, 60세대
    - 전용 70.7903m<sup>2</sup> 40세대
    - 전용 70.7903m<sup>2</sup> 20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 업 비 : 9,530,060천원
4. 사업기간 (**변경**)
  - 가. 당초 : 2013. 09. 01 ~ 2014. 11. 30
  - 나. 변경 : 2014. 02. 03 ~ 2015. 05. 30
5.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 **변경** 승인일 : 2013년 11월 07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3- 140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1.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9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3-2006호

## 『군산물류지원센터』

# 관리·운영 위탁업체 공모계획 공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위탁업체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

군 산 시 장

### 1. 군산물류지원센터 현황

가. 시 설 명 : 군산물류지원센터

나. 위 치 : 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

다. 시설내용

1) 대지면적 : 8,120m<sup>2</sup>

2) 건물면적 : 11,989.48m<sup>2</sup> (위탁면적 별도 계획서 참조)

3) 주 용 도 : 물류창고

라. 주요 사업내용(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 와 관련)

-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 상품의 전시
-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수집·가공·제공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 2. 위탁사항

가. 위탁면적 : 9,402.24m<sup>2</sup>

1) 지원시설1층 - 669.6m<sup>2</sup>, 물류창고1,3층 - 8,732.64m<sup>2</sup>

나. 주 용 도 : 물류창고 및 업체사무실

다. 위탁운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위탁자와 운영업체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 운영 가능

라. 사 용 료 : 매출액의 1천분의 5(운영주체와 협의 결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2의 ③항』 적용

마. 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업체 공모계획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13. 11. 13 ~ 12. 3.

4. 서류접수장소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5. 접수기한 : '13. 12. 3(화) 18:00 까지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계(☎063-454-2683)

## 『군산물류지원센터』

## 관리·운영 위탁업체 공모계획

## I. 군산물류지원센터 현황

- 시설명 : 군산물류지원센터
- 위치 : 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
- 시설내용
  - 1) 대지면적 : 8,120m<sup>2</sup>
  - 2) 건축면적 : 11,989.48m<sup>2</sup>

구 분	건축면적(m <sup>2</sup> )			비 고
	소 계	지원시설	물류창고	
계	11,989.48	3,256.84	8,732.64	
1층	5,463.78	1,194.06	4,269.72	※ 지원시설 1층 일부, 물류창고 1,3층만 위탁대상임
2층	1,031.39	1,031.39		
3층	5,494.31	1,031.39	4,462.92	

- 주요 사업내용(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 와 관련)
  -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 상품의 전시
  -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수집·가공·제공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 II. 물류지원센터 위탁계획

- **위탁면적 : 9,402.24m<sup>2</sup>**
  - ▶ 지원시설 1층 669.6, 물류창고 1, 3층 8,732.64
- 주 용 도 : 물류창고 및 업체사무실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 위탁자와 운영업체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 운영 가능
- 사 용 료 : 매출액의 1천분의 5(운영주체와 협의 결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2의 ③항』 적용
- 접수기간 : '13. 11. 13 ~ 12. 3. 18:00
  - ※ 방문 접수(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계)

## II. 신청자격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②항의 단체 또는 법인
    - 중소기업자단체
    -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III. 선정기준

- 사업자선정
  - 평가항목 : ①사업수행 능력, ②재무구조의 안정성, ③사업계획, ④위탁사용료 등
  - 심사위원회 위원별 평가항목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한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지정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평가결과는 미 공개함.

#### IV. 제안서 관련안내

##### 제출서류

##### ○ 제안서 11부

- 2013. 12. 3(화) 18:00까지 제출

- 평가항목(①사업수행 능력, ②재무구조의 안정성, ③사업계획, ④위탁사용료) 등에 따라 제안내용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서약서 1부, 위탁사용료 제안서 1부

##### ○ 군산 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사업 참가신청서 1부

##### ○ 정관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각 1부

##### ○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 ○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국내 평가기관 인정서 1부(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 ○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행사 개최 시, 시설 일부를 군산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만, 행사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고 행사 기간 중에 화물의 입.출입은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만 가능함.
-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기능이 지원되어야 함.
-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영문약어 사용 시 간단한 설명 기술
-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추가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 포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을 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함.
- 위탁기간의 만료나 위탁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철수할 경우 건물은 원상 복구해야 함

기타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가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참가자격 제한 및 선정취소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평가배점에서 평점결과 소숫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문의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계(☎ 063-454-2683)

(별지 제1호서식)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사업 참가신청서

신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청	전 화 번 호			
	법 인 설 립 일			
인	취 급 품 목			

군산 물류지원센터 관리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2013년 11월 일

신 청 인 (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표지 양식

70mm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사업 참가제안서

2013. 11. .

인식명칭

주) 1. 표지크기 : A4

2.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기재하여 제출

# 서 약 서

본 사는 금번 군산시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 및 제안의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위탁운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 결과 등 일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3년 11월 일

주소 (업체명) :

성 명 :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군산물류지원센터 」  
관리·운영 위탁사용료 제안서

사 용 료 (년)	공 고 번 호	제2013 - 호	제안서제출 마감일자	2013년 월 일
	건 명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사업		
	금 액	금 원정(W ) ※ 연간매출액 : 금 원정(W )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3년간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이 제안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위탁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확약  
하며,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3. 11. .

제 안 자 : ①

군 산 시 장 귀하